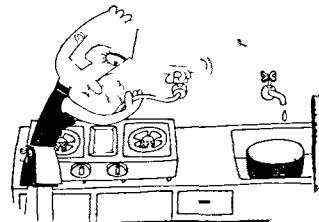


# 關係法令



## “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”

(1973. 2. 6. 公布)  
(法律 第 2482 號)

**第1條(目的)** 이 法은 火災로 因한  
人命 및 財產上의 損失을 預防하  
고, 신속한 災害復舊와 人命被害  
에 對한 適正한 補償을 하게 함  
으로써 國民生活의 安定에 寄與  
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

**第2條(定義)** 이 法에서 使用하는  
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

1 “損害保險會社”라 함은 保險  
業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 火  
災保險事業의 免許를 받은 者  
를 말한다

2 “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”  
이라 함은 人災로 因한 建物  
의 損害와 第4條 第1項에 規  
定한 損害賠償責任을 擔保하는

保險을 말한다  
3 “特殊建物”이라 함은 다음 각  
號 1에 該當하는 建物을 말한  
다  
가 四層以上의 建物

나 國有建物 教育施設 百貨  
店 市場 醫療施設 興行場  
宿泊業所 工場 共同住宅 其  
他 多數人이 出入 또는 勤務  
하거나 居住하는 建物로써  
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建物

**第3條(適用地域)** 이 法의 適用地  
域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

**第4條(建物所有者 損害賠償責任)**

① 特殊建物의 所有者は 그 建物  
의 火災로 因하여 他人이 死亡  
하거나 負傷한 때에는 過失이  
없는 경우에도 第8條의 規定에  
依한 保險金額의 範圍안에서  
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 
失火責任에 關한 法律의 規定

에 不拘하고 特殊建物 所有者  
에게 輕過失이 있는 境遇에도  
또한 같다

② 特殊建物의 所有者の 損害賠  
償責任에 關하여는 이 法의 規  
定에 依하는 外에 民法의 規定  
에 依한다

**第5條(保險加入義務)** ① 特殊建  
物의 所有者は 前條 第1項의 規  
定에 依한 損害賠償責任의 履行  
을 爲하여 그 建物을 損害保險會  
社가 營為하는 身體損害賠償特約  
付火災保險(以下 “特約付火災保  
險”이라 한다)에 加入하여야 한다  
다만 從業員에 對하여 產業災害  
補償保險法에 依한 產業災害補償  
保險에 加入하고 있는 境遇에는  
그 從業員에 對한 第4條 第1項의  
規定位에 依한 損害賠償責任을 擔  
保하는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 한  
수 있다

② 特殊建物의 所有者는 前項의 規定에 依한 特約付火災保險에 附加하여 風災·水災 또는 倒壞等으로 因한 損害를 擔保하는 保險에 加入할 수 있다

③ 損害保險會社는 前 2項의 規定에 依한 保險契約의 締結을 拒絕하지 못한다

④ 特殊建物의 所有者는 그 建物이 竣工検査에 合格된 날 또는 그 所有權을 取得한 날로부터 30日內에 特約付火災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

⑤ 特殊建物의 所有者는 前項의 特約付火災保險契約을 每年 更新하여야 한다

#### 第6條(外國人 等의 所有建物에 對한 特例) 特殊建物中 다음 각號의

1에 該當하는 建物에 對하여는 第4條 및 前條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

1 大韓民國에 派遣된 外國의 大使 公使 其他 이에 準하는 使節이 所有하는 建物

2 大韓民國에 派遣된 國際聯合의 機關 및 그 職員(外國人에 限한다)이 所有하는 建物

3 大韓民國에 駐屯하는 外國軍隊가 所有하는 建物

4 軍事用建物과 外國人所有 建物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建物

#### 第7條(保險加入의 促進) ① 財務部長官은 第5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의 加入義務者가 그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에 對하여 加入義務者에

對한 認許可의 取消, 営業의 停止, 建物使用의 制限 等 必要한 措置를 取할 것을 要請할 수 있다  
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要請을 받은 行政機關은 正當한 理由가

없는 限 이에 應하여야 한다

第8條(保險金額) ① 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加入하는 保險의 保險金額은 다음 각號에 依한다

1 火災保險은 特殊建物의 時價에 該當하는 金額

2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 中 死亡의 境遇에는 被害者 1人當 50萬원 以上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

3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中 負傷의 境遇에는 被害者 1人當 死亡者에 對한 保險金額의範圍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

② 前項 第1號에 規定한 時價의 決定에 關한 基準은 財務部令으로 定한다

第9條(保險全額의 請求) 第4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한 損害保險契約이 發生한 때에는 被害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損害保險會社에 對하여 前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金의 支給을請求할 수 있다

第10條(押留의 禁止) 이 法에 依한 保險金請求權中 身體損害賠償責任保險의 請求權은 이를 押留할 수 없다

#### 第11條(韓國人災保險協會의 設立)

損害保險會社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對한 安全點檢과 이에 關한 研究 啓蒙 等을 그 業務로 하는 韓國人災保險協會(以下 “協會”라 한다)를 設立하여야 한다

第12條(法人格) ① 協會는 社團法人으로 한다

② 協會에 關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除外하고는 民法中 社團法人에 關한 規定을準用한다

第13條(名稱使用的 制限) 이 法에 依한 協會가 아닌 者는 韓國火災保險協會 또는 이와 類似한 名稱을 使用하지 못한다

第14條(出捐) 損害保險會社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協會의 設立과 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出捐하여야 한다

第15條(業務) 協會는 다음 각號의 業務를 行한다

1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에 對한 安全點檢

2 火災保險에 關する 消火設備에 따른 料率割引等級의 查定

3 人災豫防과 消火施設에 關한 資料의 調查 研究 및 啓蒙

4 行政機關 其他 關係기관에 的 火災豫防에 關한 建議

5 其他 財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은 業務

第16條(安全點檢) ① 協會는 保險契約締結時 또는 保險契約更新時 마다 當該 特殊建物의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을 實施하여야 한다

② 協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特約付火災保險加入特殊建物에 對하여 火災豫防 및 消火施設의 安全點檢을 實施할 수 있다

③ 特殊建物의 所有者는 正當한 理由가 없는 限 前 2項의 規定에 依한 安全點檢에 應하여야 한다

④ 特殊建物의 所有者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安全點檢에 不應한 때에는 協會는 消防官署의 長에게 그에 對한 安全點檢을 要請할 수 있다

⑤ 協會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한 安全點檢을 할 경우에 어떠한 名目的 費用도 이를 받을 수 없다

⑥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依  
한 安全點檢은 大統領令이 定하  
는 바에 依한다

第17條(改善建議) 協會는 前條의  
規定에 依한 安全點檢結果, 以要  
하다고 認定할때에는 關係行政機  
關에 그 防火施設의 改善에 以要  
한 措置를 取하여 줄것을 建議하  
여야 한다.

第18條(肖人器機의 寄贈 等) ① 協  
會는 事業年度마다 財務部長官의  
承認을 얻어 行政機關 其他 關係  
機關에 肖人器機를 寄贈하거나  
特殊建物의 所有者에게 消火設備  
改良에 以及한 資金을 貸與할 수  
있다

② 損害保險公社 또는 協會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消火器機의 製造工場을 設立하거나 消火器機를 製造하는 者에게 必要한 資金을 貸與할 수 있다

**第19條(業務計劃)** ① 協會는 事業  
年度마다 業務計劃을 作成하여  
當該年度가 開始되기 1月前에 財  
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 
얻어야 하다

② 財務部長官은 前項의 规定에  
依한 業務計劃을 承認하고자 할  
때에는 内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 
한다

③ 第1項의 業務計劃을 變更하고  
자 할 때에도 前 2項의 規定을 準  
用하다

**第20條(任員)** ① 協會는 그 任員을 選任하거나 改善하고자 할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.

② 協會의 常務에 從事하는 任員  
이 다른 業務에 從事하고자 할  
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  
어야 한다.

### ③ 財務部長官은 協會의 任員이

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할 때에는  
그 解任을 命할 수 있다

1 이 法 또는 이 法에 依한 命令  
이나 定款에 違反한 때

## 2 刑事事件에 依하여 有罪判決 을 받은 때

### 3 破産宣告를 받은 때

#### 4 公益을 害하는 行爲를 한 때

## 5 し身의 障碍로 因하여 職務遂 行이 困難하게 된 때

第21條(監督) ① 財務部長官은 協  
會의 効率의 運營을 為하여 必  
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協會의  
定款 또는 業務方法의 變更을 命  
하거나 監督上 必要한 命令을 下  
수 있다

② 内務長官은 第15條의 規定에  
依한 協合의 業務 中 同條 第1項  
및 第3號의 業務에 關하여 監督  
上 以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

第22條(報告와 檢查) ① 財務部長  
官은 必要하다고 指定할 때에는  
定期 또는 隨時로 協會에 對하여  
그 業務에 關한 報告書의 提出을  
命하거나 所屬公務員 또는 財務  
部長官이 指定하는 者로 하여금  
協會의 業務狀況 또는 帳簿書  
類 其他 必要한 物件을 檢查하게  
할 수 있다

② 内務部長官이 第15條 第1號 및 第3號의 協會의 業務에 關하여 以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도 前項의 規定을 運用한다

③ 前 2項의 規定에 依한 檢查를  
하는 者는 그 權限을 表視하는  
證標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 
한다

第23條(罰則) 第5條 第1項의 規定  
에 違反한 者는 500萬원 以下의

罰金에 處하다

處한다  
第25條(施行令) 이 法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

附四

① (施行日) 이 법은 公布한 날  
로 부터 施行한다

② 이 法 施行當時 第5條의 規定  
에 該當하는 特殊建物의 所有者  
와 이 法 施行日로부터 1974年 6  
月 30日사이에 第5條의 規定에  
依한 加入期限이 到來하는 特殊  
建物의 所有者は 1974年 6月 30  
日까지 이 法에 依한 特約付火  
災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

⑥ (同前) 이 法 施行當時 第2條  
第1號에 該當하는 損害保險會社  
는 1973年 6月 30日 까지 第11條  
의 規定에 依한 協會를 設立하여  
야 한다.



# 火災로 因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律 施 行令

(1973 5 11)  
大統領令 第6670號

第1條(目的) 이 송은 火災로 因한  
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  
律(以下 “法”이라 한다)의 施行  
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  
을 目的으로 한다

第2條(特殊建物) ① 法 第2條 第3  
號 나의 規定에 依한 建物은 다  
을 各號의 1에 該當하는 建物로

한다

- 1 國有財產法 第3條 第1項 第1號에 規定한 不動產 中 延面積이 1,000平方「미터」以上인 建物  
다만 大統領官邸와 特殊用途에 供하는 建物로서 財務部長官이 指定하는 建物을 除外한다
- 2 私設講習所에 關한 法律 第2條에 規定한 私設講習所로 使用하는 部門의 延面積이 330平方「미터」以上인 建物
- 3 醫療法 第3條 第2項에 規定한 総合病院 또는 病院으로 使用하는 建物
- 4 宿泊業法 第2條 第2項에 規定한 호텔로 使用하는 建物
- 5 公演法 第2條 第3項에 規定한 公演場으로 使用하는 建物
- 6 映画 또는 텔레비죤 报影所로 使用하는 建物 및 放送施設場으로 使用하는 建物
- 7 屋内販賣場으로 使用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1,000平方「미터」以上인 建物
- 8 市場法 第2條 第3號에 規定한 市場으로 使用하는 建物
- 9 地方稅法 施行令 第103條에 規定한 料理店 舞蹈場 「캬바리」 또는 「바」로 使用하는 部分의 延面積이 330平方「미터」以上인 建物
- 10 教育法 第81條에 規定한 學校 建物 다만 社團法人 學校 災害復舊 井濟會에 加入한 것을 除外한다
- 11 家口數 10以上의 것으로서 延面積이 1,000平方「미터」以上인 共同住宅建物 다만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指定하는 市民共同住宅을 除外한다

② 法 第2條 第3號 가의 規定에 依한 4層以上建物의 層數計算方法은 建築法施行令 第6條 第1項 第7號의 規定에 依하되 地下層은 이를 層으로 보지 아니한다

**第3條(適用地域)** 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 法의 適用地域은 서울 特別市 釜山市 및 大邱市로 잔다

**第4條(特例)** 法 第6條 第4虎의 規定에 依한 軍事用建物은 國防部長官 및 丘務廳長이 管理하는 建物로서 다음 各號에 掲記한 것 以外의 建物을 말한다

- 1 國防部長官이 指定하는 3層以上의 建物
- 2 國軍統合病院의 診療部와 病棟建物
- 3 軍人共同住宅

**第5條(保險金額)** ① 法 第8條 第1項 第2號 및 第3號의 規定에 依한 保險金額은 다음과 같다

- 1 死亡의 境遇에는 50萬원
- 2 負傷의 境遇에는 別表에서 定하는 金額 다만 支給保險金은 實損害額을 超過할 수 없다
- ② 第1項 第2號의 規定에 依한 實損害額의 範圍는 財務部令으로 定한다
- ③ 負傷者가 治療 中에 死亡한 時遇에는 第1項 第1號 및 第2條의 保險金을 함께 支給한다

**第6條(保險金 支給請求 節次)** ① 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金의 支給을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請求書를 損害保險會社에 提出하여야 한다

- 1 請求者の 住所 및 姓名
- 2 死亡者에 對한 請求에 있어서는 請求書와 死亡者와의 關係
- 3 被害者와 保險契約者の 住所

및 姓名

4 事故發生 日時, 場所 및 그概要

5 請求하는 金額과 그 算出基礎. ② 第1項의 請求書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添附하여야 한다

- 1 診斷書 또는 檢案書
- 2 第1項 第2號乃至 第4虎의 事項을 證明하는 書類

3 第1項 第5號의 算出基礎에 關한 證書類

**第7條(保險金 支給에 對한 章見聽取)** 損害保險會社는 第6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金을 支給하고자 할 때에는 保險契約者の 章見을 들어야 한다

**第8條(保險全 支給)** ① 損害保險會社는 保險金의 支給請求가 있을 때에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遲滯없이 이를 支給하여야 한다

② 損害保險會社는 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하여 保險金을 支給한 때에는 遲滯없이 다음 各號의 事項을 保險契約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

- 1 保險金의 支給請求者와 受領者의 住所 및 姓名
- 2 請求額과 支給額
- 3 被害者와 住所 및 姓名

**第9條(設立許可申請)** 損害保險會社가 法 第11條의 規定에 依하여 韓國火災保險協會(以下 “協會”라 한다)의 設立許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許可申請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添附하여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

- 1 定款
- 2 事業方法書
- 3 創立總會 議事錄

**第10條(協會費의 出損 等)** ① 法 第14條의 規定에 依하여 損害保險

會社가 出捐하여야 할 費用(以下  
“協會費”라 한다)은 火災保險料  
收入의 100分의 7로 한다  
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한 災保險料  
收入의 算出方法와 協會費의 出  
捐方法 및 出捐時期에 關係하는  
財務部令으로 定한다  
 ③ 協會는 그 旣營上 必要하다고  
認定할 때에는 財務部長官의 承  
認을 얻어 損害保險會社에 對하  
여 協會費의 前度를 要請할 수  
있다  
 ④ 協會는 第3項의 規定에 依하여  
協會費의 前度를 받은 때에는當  
該年度內에 이를 精算하여야 한  
다

**第11條(資金의 借入)** 協會는 財務  
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그 旣營에  
必要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

**第12條(安全點檢)** ① 協會는 法 第  
16條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 
依하여 安全點檢을 實施하고자  
할 때에는 48時間前에 이를 關係  
人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 
 ②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安全點  
檢을 實施하는 者는 그 身分을  
證明하는 證標를 關係人에게 提  
示하여야 한다  
 ③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安全點  
檢을 實施하는 者는 그 身分을  
證明하는 證標를 關係人에게 提  
示하여야 한다  
 ④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安全點  
檢을 實施하는 者는 그 身分을  
證明하는 證標를 關係人에게 提  
示하여야 한다

은 關係人の 承諾 없이 日出前, 日  
沒前에 이를 實施할 수 없다  
 ⑤ 協會는 法 第16條 第1項 및 第  
2項의 規定에 依하여 安全點檢을  
實施한 때에는 10日內에 그 結果  
를 管轄 警防官署의 長에게 通知  
하여야 한다

## 附 則

- ① (施行日) 이 令은 公布한 날  
로부터 施行한다
- ② (經過措置) 損害保險會社가  
第10條의 規定에 依하여 協會에  
出捐하는 初年度 協會費는 1973  
年 5月 1일부터 1973年 12月 31  
日까지의 火災保險料收入의 100  
分의 7로 한다

### 傷害三分 및 保險金額

傷害 級別	保 險 金 額	傷 害 部 位
1 級	40萬원	1 殷關節骨折 또는 骨折性脫臼 2 脊椎體粉碎性骨折 3 脊椎體骨折 또는 脱臼로 因한 諸 神經 症狀으로 手術이 不可避免 傷害 4 外傷性頭蓋腔內出血로 開頭術이 不可 避免 傷害 5 頭蓋骨의 陷沒骨折로 神經學的 症狀 이甚한 傷害 6 腦腫脹과 乳頭腫脹이 甚하거나 其他의 頭腦損傷으로 生命이 危篤한 傷害 다만 損害保險會社가 指定하는 3人以上 의 專門醫師의 診斷이 있어야 한다 7 大腿骨幹部의 粉碎性骨折 8 頸骨下 3分의 1部 粉碎性骨折 9 3度火傷 等 軟部組織損傷이 體表의 約 9%퍼센트以上인 傷害 10 4肢와 肋幹部의 軟部組織損傷이 甚 有莖植皮術이 不可避免 傷害 11 其他 1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 害
2 級	35萬원	1 上肺骨 幹部粉碎性骨折 2 脊椎體의 模狀壓迫骨折이 있으나 諸 神經症狀이 없는 傷害

3 級	30萬원	3 頭蓋骨骨折로 神經學的症狀이 顯著 한 傷害 4 內部臟器破裂과 骨盤骨折의 同伴된 傷 害 5 膝關節脫臼 6 足骨幹部骨折과 骨折性脫臼가 同伴된 傷害 7 尺骨幹部骨折과 桡骨骨頭脫臼가 同伴 된 傷害 8 仙腸骨間關折脫臼 9 其他 2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害
		1 上肺骨 頸部骨折 2 上肺骨頸部骨折과 肘關節脫臼가 同伴 된 傷害 3 桡骨과 尺骨의 幹部骨折이 同伴된 骨 折傷害 4 手根舟狀骨骨折 5 桡骨神經損傷을 同伴한 上肺骨幹部骨 折 6 大腿骨幹部骨折 7 膝蓋骨의 粉碎骨折과 脱臼로 因해 膝 蓋骨完全摘出術이 適應되는 傷害 8 腕骨頸部骨折이 關節面을 侵犯하는 傷 害

	9 足根骨足蹠骨間 開節脫臼와 肩折이 同 伴된 傷害	4 多發性中足骨骨折
	10 前後十字靱帶나 内外側半月狀軟骨破 裂과 膝骨棘骨折 等이 複合된 膝關節 内障	5 臀骨 挫傷 腸骨의 單一骨折
	11 腹部內臟破裂로 手術이 不可避한 傷 害	6 單純膝蓋骨骨折
	12 脳損傷으로 腦神經麻痹는 同伴된 傷 害	7 桡骨幹部骨折(遠位部骨折을 離外한다)
	13 脑腫脹과 乳頭腫脹이 있고 神經學的 症狀이 甚한 傷害 다만 損害保險會社 가 指定하는 3人 以上의 專門醫師의 診 斷이 있어야 한다	8 尺骨幹部骨折(近位部骨折을 離外한다)
	14 其他 3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 害	9 尺骨肘頭骨折
4級 25만원	1 大腿骨頸部骨折	10 多發性中手骨骨折
	2 胫骨幹部骨折	11 頸蓋骨骨折과 神經學的症狀이 輕한 傷害
	3 距舟頸部骨折	12 外傷性蜘蛛 耳下出血
	4 肺蓋韌帶破裂	13 腦挫傷으로 神經學的症狀이 甚한 傷 害
	5 肩甲關節部의 回旋筋蓋破裂	14 其他 6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 害
	6 上腕骨外側上顆轉位骨折	7 級 15만원
	7 肘關節部骨折과 脫臼가 同伴된 傷害	1 小兒의 上肢長管骨幹部骨折
	8 3度火傷 等 軟部組織損傷이 體表의 約 4.5「피센트」以上인 傷害	2 足跗節內顆骨 또는 外顆骨骨折
	9 其他 4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害	3 上腕骨上顆部屈曲骨折
5級 21만원	1 背盤骨의 重複骨折(「말가이그니」氏 骨折 等)	4 股關節脫臼
	2 足關節部의 内外顆骨折이 同伴된 傷害	5 肩甲關節脫臼
	3 膝關節部의 内側 또는 外側副韌帶 破 裂	6 肩峰肱骨間關節部脫臼
	4 足蹠骨骨折	7 2度火傷 等 軟部組織損傷이 體表의 約 4.5「피센트」以上인 傷害
	5 上腕骨幹部骨折	8 其他 7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害
	6 桡骨遠位部骨折	8級 12만원
	7 尺骨近位部骨折	1 上腕骨上顆部伸展骨折
	8 多發性肋骨骨折과 血胸 또는 肺炎 同伴된 傷害	2 鎮骨骨折
	9 手掌部筋腱破裂創	3 肘門節脫臼
	10 「아카리스」腱破裂	4 肩甲骨骨折
	11 2度火傷 等의 軟部組織損傷이 體表의 約 9「피센트」以上인 傷害	5 肘關節內上腕骨小頭骨折
	12 其他 5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 害	6 腓骨骨折
6級 18만원	1 小兒의 下肢長管骨幹部骨折	7 足趾骨의 骨折과 脫臼가 同伴된 傷害
	2 大腿骨大轉子片骨折	8 多發性 肋骨骨折
	3 大腿骨小轉子部切片骨折	9 脂肪組織損傷으로 神經學的症狀이 輕한 傷害
		10 下頸骨骨折
		11 其他 8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 害
		9 級 9만원
		1 脊椎骨의 棘狀突起 또는 橫突起骨折
		2 桡骨頭骨折
		3 腕關節內 月狀骨前方脫臼 等 手根骨脫 臼
		4 手指骨의 骨折과 脫臼가 同伴된 傷害
		5 中手骨骨折
		6 手根骨骨折(舟狀骨은 離外한다)
		7 足根骨骨折(距骨 跟骨은 離外한다)
		8 中足骨骨折
		9 足足部扭挫

10 肋骨骨折	10級 7 만원	1 足趾有開節脫臼 및 捏挫
11 脊椎體間關節部 捏挫와 周圍軟部組織 (韌帶筋肉 等)損傷이 同伴된 傷害		2 手指開節脫臼 및 捏挫
12 外傷性膝關節內 血腫		3 鼻骨(코)骨折
13 中手骨指骨間關節脫臼		4 手指骨骨折
14 手根骨中手骨間關節脫臼		5 足趾骨骨折
15 腕關節部 捏挫		6 腦震盪
16 諸 不完全骨折(脊骨 手指骨, 足趾骨 을 除外한다)		7 其他 9日 乃至 14日間의 入院을 要하는 는 傷害
17 其他 9級에 該當한다고 認定되는 傷 害	11級 4 만원	4日 乃至 8日間의 入院을 要하는 傷害
	12級 2 만원	3日 以下의 入院을 要하는 傷害

### 參 考

- 1 2級 乃至 10級까지의 傷病名中  
開放性骨折은 該當 等級보다 1級  
높이 補償한다
- 2 2級 乃至 10級까지의 傷病名中

單純社線狀骨折로 骨片의 轉位가  
없는 骨折의 境遇에는 該當 等級  
보다 1級 낮게 補償한다

3 2級 乃至 10級까지의 傷病名中  
2가지 以上의 傷害가 重複된 때  
에는 가장 높은 等級에 該當하는

傷害로부터 下位 3等級(例 2級  
이 主症일 때에는 5級까지 사이)  
사이의 傷害가 重複된 때에 限하  
여 1級 높이 補償한다

**第2條(實損害額)** 人災로 인한 災  
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関한 法律施行令  
施行令(이하 “令”이라 한다) 第5  
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実損害  
額은 人災로 인하여 身體上에 傷  
害를 입은 경우에 그 傷害를 治  
療함에 소요되는 모든 費用으로  
한다

**第3條(人災保險料 算出方法)** 令 第  
10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人災

保險料는 一般人災 保險料의 原  
受保險料와 長期人災保險 및 特  
種保險의 原受保險料중 人災危  
險保險料로 한다

**第4條(出捐時期)** 令 第10條 第2項  
의 規定에 의한 協會費는 每月  
當月分을 翌翌 月末日까지 出捐  
하여야 한다

### 附 則

이 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

### 「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」施 行規則

(1973年 6月 6日)  
(財務部令 956號)

**第1條(目的)** 이 令은 火災로 因한  
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關한 法  
律의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細部  
事項을 規定함은 目的으로 한다

